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0일, 천준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국회의원 천준호)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곽현준)

가. 개정안의 내용

현재 안전순찰원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개정안은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순찰원을 제도화하고 안전순찰원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7조의2(안전순찰원) ①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u>초동조치</u>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안전순찰원 관련 현황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처리 등의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운영사가 임명한 직원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이들의 업무는 노선 순찰, 고객응대 및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 법규위반차량 계도 등으로 구성됨.

【 안전순찰원 주요 임무 】

주요 임무	내 용
노선 순찰	○ 하루 10회 이상, 2인 1조 2~3교대 방식 등으로 진행 - 노면잡물 제거, 보행자·이륜차 이동 조치, 졸음운전 등 사고위험차량 계도, 고장차량 안전관리, 갓길 주정차 차량 계도, 동물 유도 - 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손 상태, 작업장 안전관리, 교통정체, 기상상태 파악 - 졸음쉼터, 휴게소, 영업소, 구조물(터널, 교량 등) 상태 점검 등
고객응대 및 지원	○ 배터리 충전, 냉각수 보충, 견인협조, 서비스업체 연락 대행, 민원 응대 등
교통사고 처리 지원	○ 사고지점 후미 안전관리 (안전순찰차 안전장치 작동, 교통콘 설치 등) ○ 사고내용 파악 보고 (관련차량, 사고유형, 인명피해 현황 등) ○ 사고처리 및 조사 (고순대, 119구급대, 견인차량 등 유관기관 협조·지원) ○ 기타 (사고잔재물 처리, 시설물 파손상태 파악, 지원장비·인력 요청)
법규위반차량 계도	○ 적재불량, 갓길주행 위반, 보행자·이륜차 통행, 지정차로 위반, 후부 안전 기준 위반 등

※ 자료 : 국토교통부

【 안전순찰원 활동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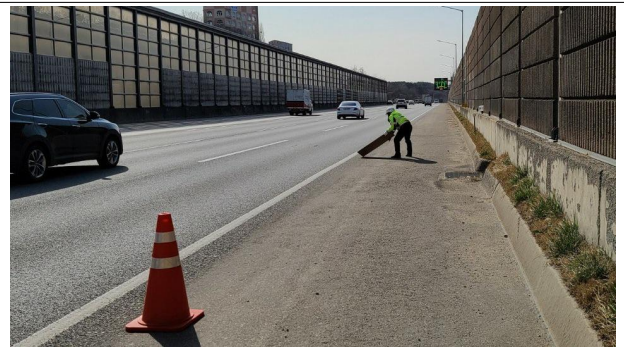
(안전관리)



(고장차량 지원)



(낙하물 제거)



(낙하물 제거)



(불법 주정차 계도)



(불법 주정차 계도)



(위험요인 제거)



(법규위반 합동단속 지원)

※ 자료 : 국토교통부

2024년 11월 말 기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총 1,298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975(75.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민자도로운영사가 안전순찰업무를 위탁한 회사에 323명(24.9%)이 소속되어 있음.

【 안전순찰원 운영 현황 】

(2024.11월말 기준)

관리기관	관리노선	정원 (명)	교대형태	관리연장 (km)	운영 방식
계		1,298		5,000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등	975	4조3교대	4,117	직영
민자소계	22개소	323		883	
신공항하이웨이	인천국제공항	32	4조3교대	38.2	외주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논산	24	4조3교대	81	외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부산	24	4조3교대	82.1	외주
서울외곽선	수도권제1순환	28	4조3교대	36.3	외주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울산	17	4조3교대	47.2	외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춘천	17	4조3교대	61.4	외주
경수고속도로	용인-서울	22	4조3교대	22.9	외주
인천대교	인천대교	16	4조3교대	12.3	외주
경기고속도로	서수원-평택	12	3조2교대	38.5	외주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15	3조2교대	42.6	외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	18	3조2교대	27.4	외주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	14	3조2교대	57	외주
부산항제이배후도로	부산항제2배후	6	3조2교대	15.3	외주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김포	6	3조2교대	28.9	외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영천	18	3조2교대	93.9	외주
서울북부고속도로	구리-포천	12	3조2교대	50.6	외주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6	3조2교대	21.92	외주
옥산오창고속도로	옥산-오창	6	3조2교대	12.1	외주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문산	12	3조2교대	35.2	외주
경기동서순환도로	봉담-송산	6	3조2교대	18.3	외주
화성광주고속도로	화성-광주	6	3조2교대	31.2	외주
포천화도고속도로	포천-화도	6	3조2교대	28.7	외주

※ 자료 : 국토교통부

다. 검토의견

안전순찰원의 운영 규모, 실제 수행 업무, 1973년부터 운영된 안전순찰원의 연혁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속도로 안전관리 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안전순찰원의 신분 및 직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교통사고 시 통행제한, 사고차량 이동지시 등 업무 관련 법적 권한이 부재하여 운전자 불응 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안전순찰원에게 경찰을 보조하여 고속도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²⁾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³⁾되었으나, 제21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사 시⁴⁾ 경찰청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는 동의하나, 안전순찰원의 자격 규정이 미비하므로 「도로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순찰원의 신분, 자격 요건 등을 선행적으로 규정 후 「도로교통법」에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⁴⁾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로법」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생각됨.

1) 안전순찰원의 구체적인 연혁은 【참고자료】 참조

2) 제20대 국회 1건, 제21대 국회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들의 내용은 대부분 경찰청장이 한국도로공사 등 안전순찰원 운영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순찰 업무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20대 국회 임종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7058호), 제21대 국회 최춘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5596호),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1274호), 박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4241호)이 있음.

3)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1.11.25.)

4) 이후 해당 법안들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됨.

참고로, 동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여 안전순찰원에게 위험방지 조치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735호)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⁵⁾ 동 개정안은 안전순찰원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자동차 통행 일시 제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제57조의 도로관리원,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의 사례가 있음. 도로관리원은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으로 도로의 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 운행제한단속원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 직원 중 현행법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도로법」 및 동 법 시행규칙⁶⁾에 법적 근거, 권한 부여, 자격,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⁷⁾

5) 동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나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에게 관련 업무 권한을 부여하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27호)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6)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①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 도로법 중 안전순찰원과 유사 사례 】

도로관리원	운행제한단속원
제57조(도로관리원)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u>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u>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 관리
- 7) 운행제한단속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6.1.19. 마련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제한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단속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칭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취지였음.

다만, 고속도로에서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운행제한단속원과 유사하게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법률에서 그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국토교통부령에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음.

라. 국토교통부 의견

안전순찰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법적 권한 부여 필요성에 동의하며,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현황,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범위, 업무방식(증표 제시) 등이 적절하게 규정되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복기왕)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7조의2의 제목 “(안전순찰원)”을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57조의2(안전순찰원) ①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에 서의 원활한 도로 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 112조에 따라 고속 국도에 관한 도로 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 14조에 따라 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

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u>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u>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를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u> <u>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u>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①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 ----- ----- ----- ----- ----- -----
--	---

<u>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 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 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 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 다.</u> 1. ~ 3. (생략) ② ~ ⑧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	---